

#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792
----------	------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1. 개정이유

상위법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고,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사업의 범위 및 관리자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다. 특별회계의 설치 등 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 라.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제18조)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나.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등 (※ 붙임)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8. 10. ~ 8. 30.(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 4)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6)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구광역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4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6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 관련 경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7조(출자)** ① 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규모사업을 하는 경우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6조에 따른 전입금

**제9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1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 적립금의 적립
3.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제12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39

조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상수도시설 내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고, 축구장 사용료는 강변축구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4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제21조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등)** ①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업무상황 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8월 31일까지 제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 2월 28일까지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기업 또는 수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 700,000,000원을 이 조례에 따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본다.

②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자본계정으로 수정한 사항은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 것으로 본다.

# 관 계 법 령

## □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17조(출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出資)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金)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 라 한다)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의 총괄)** 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현금취급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산표(試算表), 자금운용보고서 및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填)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마다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제39조(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변상책임)** ①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分任者)는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사업범위)**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삭제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지출원·자산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현금취급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 및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2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장 김 연 숙